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가단5727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고 1. A

2. B

3. C

4.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5. 주식회사 E

6. F

변론 종결 2022. 9. 7.

판결 선고 2022. 10. 19.

주 문

1. 가. 피고 A와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는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0. 10. 27. 접수 제111883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G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0. 11. 30. 접수 제12378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 D, 주식회사 E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1. 1. 22. 접수 제75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F은 G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1. 1. 18. 접수 제54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7.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보증금액 3억 1,450만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G이 H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H은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6. 20. 주식회사 I으로부터 3억 7,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2021. 3. 11.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1. 8. 17. H을 대위하여 주식회사 I에 165,039,477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차전55888호로 H과 G에 대하여 구상금 164,022,03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지급명령이 2021. 11. 2.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G은 2020. 10. 27.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G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지분과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 A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피고 B은 2020. 11. 30.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3억 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21. 1. 11.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피고 C, D,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21. 1. 22.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F

가. 청구의 표시

G과 피고 A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 A와 전득자인 피고 F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F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C, D, E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G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G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점, ② G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에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구상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던 점, ③ 실제로 H과 G이 주식회사 I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원고의 H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G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G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J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가 1,187,437,144원 상당의 수원시 권선구 K 토지, 시가 222,562,640원 상당의 수원시 권선구 L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수원시 권선구 K, L 각 토지를 담보로 J조합에 대한 691,453,524원의 대출금 채무와 M에 대한 합계 5억 4,000만 원의 채무 및 원고에 대한 164,021,807원, 피고 B에 대하여 4,700만 원, 피고 C, D에 대하여 각 1억 원, 피고 E에 대하여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A에게 증여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G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A와 전득자인 피고 B, C, D, E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 C, D, E의 선의 여부

위 피고들은 G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을 뿐 G의 채무초과 상태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전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G과 10년 이상 금전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9. 9. 19. G에게 4,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A가 G의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0. 11. 30.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② 피고 C, D, E는 2020. 8. 20.경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에게 합계 5억 원을 대여하였고, G이 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지급기일인 2020. 12. 30.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 C, D, E는 N와 G에게 수차례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였고, G을 형사 고소하려고 준비하던 중 2021. 1. 22.

G으로부터 피고 A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뒤집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 C, D,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운

별지